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학교장의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(가해자 우선분리를 원칙으로 함)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”을 규정(안 18조 신설)

1.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
2. 학교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
3.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 ('21.4.30 ~ 6.1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 예외)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
2. 학교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
3.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(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 예외)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u> <u>1.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</u> <u>2. 학교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</u> <u>3.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</u>
<u>제18조 (생 략)</u>	<u>제18조의2 (현행 제18조와 같음)</u>